

최초 법무부안과 최종 수정안의 비교표

내 용		최초안	최종수정안	비 고
특별성 및 자율성 강화	인 이사회	· 11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인권위원 임명제청, 감사선임, 예결산 심의 · 이사 중 4인은 관계부처 차관 이 겸임, 7인은 법무장관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	· 이사회 폐기	· 이사회를 통한 정부의 관여 배 제, 인권위의 자 율성 보장
	직원신문 보장 규정	· 없음	· 직원은 형의 신고, 징계처분 및 위원회규칙에 정한 경우가 아니고 는 의사에 반하여 퇴직·휴직·강압 면직 당하지 아니함	· 공무원에 준하 는 신문보장 부 여
	사 인권위원 선임방식	· 이사회가 위원 9인을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	· 국회의장, 대법원장, 법무부장 관이 위원 3인씩 추천, 대통령 이 임명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	· 법무장관 추천 3인에 대한대로 국무회의 제청 필요
	인권위원 임기	· 2년, 1차 연임	· 3년, 1차 연임	
	예산편성 예	· 인권위 예산한을 법무부가 조정	· 법무부에서 인권위 예산안 조 정불가, 의견제시도 불허	· 예산에 관한 법 무부 관여 일체 배제
	산 기부금수령 신고조항	· 기부금 수령시 법무부장관에 신고	· 삭 제	
	민법상 재단법인 준용규정	· 인권위에 민법의 재단법인 규 정을 준용	· 삭 제	
	운 정관변경 인가제도	· 정관변경시 법무부장관의 인가 필요	· 삭 제	
	공무원파 견요청시 경유규정	· 공무원등 파견요청시 법무부 장관 경유 필요	· 삭 제	
	영 감사제도	· 이사회에서 선임	· 삭 제	
연례보고서 제출	· 대통령에게만 제출	·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		
과태료 부과절차	· 인권위원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부과	·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 이 부과		

내 용	최초안	최종수정안	비 고
위원회 조사대상	· 수사기관등과 다수인 보호시설 직원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 위 조사	· 수사기관등이 아닌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추가 · 불법 압수·수색 및 사람을 사망·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추가	· 조사대상 인 권침해행위의 주 체와 유형을 확대
차별사유	· 성별, 인종, 종교, 출신지역등 74가지	· "정치적 견해"추가	· 15가지로 확대
인권위의 업무범위	· 인권교육·홍보,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조사·구제 등 8개사항 규정	·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권고와 연구,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인권관련 연구·자문, 인권상황 실태조사,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제정, 국제 인권기구와의 협력 등 5개사항 을 추가	· 13개 사항으로 확대
권한 및 기능 강화	업무방해에 대한 제재	· 과태료 부과규정이외에 위원회 의 업무방해시 형법상의 공무 집행방해죄와 같이 처벌하는 규정 신설	·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
긴급구제 조치	· 별도규정 없음	·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할 경우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권을 신설	· 상대방은 48시 간내 조치결과 등 통보의무 부담
법률구조 규정	· 별도규정 없음	· 조짐 불성립시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	· 피해자의 권리 구제방안 강화
상임위원 및 소위원 회 확대	· 상임위원 3명, 소위원회 2개	· 상임위원 4명, 소위원회 3개	· 위원회의 업무수행 역량강화
자료제출 거부사유	·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시 "법 령에 의한 비밀", "사건관계인 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"등도 거부사유로 규정	·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으로 한정	· 거부사유 축소로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강화